

‘24년 근로감독은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 으로

- 고용노동부,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특히 고의·상습 체불은 특별근로감독 원칙 확립을 통한 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 내리고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확대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하여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 (‘23년) 정기-수시-특별 → (‘24년) 정기-수시-특별-재감독(신설)

고의·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①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②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제도, 관행, 의식 변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정기적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및 우수사례 등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2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먼저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①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②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③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④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최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동권을 촘촘히 보호하고자 한다.

- * (서울청) 프로·실업 스포츠 구단 (중부청)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 레저 스포츠업(골프, 헬스 등) (광주청) 교과 학원 (대전청) 기업 연구소

3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강화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중심으로 민간 협·단체와 역할을 분담하여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은 그간 계층별·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던 정기감독을 「종합 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종합적인 예방과 자율개선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 * ①청년 ②여성 ③외국인 ④건설 현장(산업안전 합동) ⑤고령자 ⑥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 **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 비정규직, 장시간, 공공분야 용역, 부당노동행위 등

4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 1차 익명제보센터 운영(~12월말)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되어 1월부터 기획감독 착수

또한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에 대해 과정의 적절성, 결과의 공정성, 인사노무 관리의 도움 정도 등 의견을 직접 듣고,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한다.

- * '24년 감독실시 사업장 1천여 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조사 실시

아울러, 감독이 꼭 필요한 현장에 대해 신속하고 빠짐없이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감독 요구(청원)에 최우선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하창용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최충운 (044-202-7528) 강송훈 (044-202-75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책임자	과 장	김용현 (02-2250-5862)
		담당자	근로감독관	최은진 (02-2250-5866)
	충북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책임자	과 장	신기원 (032-460-4660)
		담당자	근로감독관	함지희 (032-460-4665)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책임자	과 장	최태식 (051-850-6461)
		담당자	근로감독관	조대용 (051-850-638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책임자	과 장	장정희 (053-667-6287)
		담당자	근로감독관	정우성 (053-667-628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책임자	과 장	장영욱 (062-975-6376)
		담당자	근로감독관	정찬섭 (062-975-637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책임자	과 장	이재환 (042-480-6280)
		담당자	근로감독관	김형남 (042-480-6329)

붙임 1

'24년 근로감독 주요 내용

구분	'24년 주요 추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엄정한 법 집행 결과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재감독 신설<정기·수시·특별·재감독(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신설·확대 ❖ 신규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무관용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①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②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특별 근로감독 실시 원칙 ❖ 강화 고의·상습 법 위반 사법처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 확립
<p style="text-align: center;">일하는 문화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대 분야 집중 기획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임금체불, ②차별없는 일터, ③장시간 근로, ④부당노동행위 ❖ 신규 각 지역별 릴레이 기획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인 스포츠클럽, 헬스장 등 중심 릴레이 기획감독
<p style="text-align: center;">소규모 기업 약자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 취약계층 보호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계층별·분야별 정기감독을 종합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모든 계층 및 분야별 노동법 전반 점검 + 매 분기별 건설, 외국인, 청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현장 예방 활동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 참여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익명제고 기반 기획감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불 등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 대상 익명제보에 기반한 기획감독 +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연계 강화(다발 사업장 근로감독) ❖ 신규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 실시 사업장 대상 사후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강화 근로감독 청원 대응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감독에 앞서, 국민들의 감독 요구에 최우선 대응

붙임 2

'24년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

구분	감독 내용	
정기감독	종합 예방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계층별(① 청년 ② 여성 ③ 외국인 ④ 장애인 ⑤ 건설)분야별 (① 공공분야 용역 ② 부당노동행위) 점검 통합 → 지역별로 취약 업종을 선정하고 최근 3년 이내 근로감독이 없었던 사업장 중심으로 종합 예방 컨설팅 실시 (장시간 근로 예방) IT, 특례 제외업종 등 장시간 근로 취약 업종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은 업종
	현장 예방 점검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30인 미만)에 대한 기초 노동질서 중심의 현장 예방 활동 * 분기별로 6대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현장 예방활동 전개 ① 청년(중소 IT 벤처기업, 프랜차이즈 등) ② 여성(중소병원, 콜센터 등) ③ 외국인(중소 제조업, 외식숙박업 등) ④ 건설 현장 ⑤ 고령자(경비, 청소 등) ⑥ 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수시감독	기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부)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대 분야 기획감독 ① 상습·고의적 체불 ② 차별 없는 일터(비정규직·여성 차별) ③ 장시간 근로(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④ 부당노동행위 근절 (지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릴레이 기획감독
	신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24년 5회 이상 반복·상습적 체불 사업장
	청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원 대상 사업장) 청원 절차 및 운영방식 개선
특별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의·상습 체불 등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 발생 또는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 10억 이상 체불, 피해근로자 50인 이상 특감 실시(원칙) 	
재감독(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고 있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장 → 즉시 사법처리 강화 	